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12.14>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구 분	검 수 사 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인천항: 25명 이상 다.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7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3. 감정사				6명 이상	
4. 검량사					6명 이상

비고: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